최근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과 국내의 조류독감으로 우리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소비자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

소해면상뇌증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은 전염성해면상뇌증(TSE :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의 일종으로 일명 광우병 또는 프리온질병(Prion Diseases)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 병은 소에게 변형 단백질(변형 프리온)이 함유된 육골분 등 동물성 단백질을 급여함으로써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성 질병으로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질병과 달리 공기나 접촉으로 전염되지 않는다. "변형 프리온"을 원인체로 하는 전염성해면상뇌증(TSE)에는 동물의 종에 따라 소해면상뇌증(BSE), 양 및 산양의 스크래피(Scrapie), 사슴류의 만성소모성질병(CWD) 등으로 분류된다. 한편,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뇌에는 스폰지 모양의 공포가 생기고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를 보이다 죽게 되는데, 잠복기는 평균 4~5년으로 알려졌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지난 '96년 영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함유된 부위(변형 프리온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가 사람의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과 연관성이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심각성이 제기되었고 전세계적으로 153명이 vCJD로 사망했는데, 이들 vCJD환자는 모두 1980~1996년 사이 영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신 연구결과에 의하면 광우병에 걸린 소라 하더라도 특정위험물질 이외의 조직에서는 광우병 감염능(感染能)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2002년 EU 과학위원회에서는 "근육내 프리온 보고서"를 통해 쇠고기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공표한 바 있다. 따라서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먹지 않는 한 vCJD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정위험물질(S[illegible] Specified Ris[illegible]

[illegible]

확인하여 국제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의 뇌 및 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를 포함한 척추, 편도,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장간막"을 특정위험물질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가 광우병의 발생이 없는 청정국가인 만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광우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부터의 소·양·사슴 등 반추동물과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을 회수 조치하였다. 또한, 광우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 전염되지 않고 변형 프리온이 함유된 동물성 사료로부터 전이되는 만큼 미국산 수입생우에 대하여는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임상검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며, 도축할 때에는 전두수를 광우병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유통하도록 하였다.

국내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96년 이후 우리나라 소에 대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장기준보다 10배이상 많은 두수를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마리도 양성축은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국민은 전통적으로 SRM(특정위험부위 : 뇌, 척수, 내장 등)을 즐겨 먹는데도 아직까지 vCJD 환자가 한명도 없었다.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는 대부분 같은 원인체로부터 기인하는 전염성해면상뇌증(TSE)의 일종인 면양 스크래피의 발생을 경험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스크래피 발생이 없을 뿐만아니라 반추동물유래 단백질의 급여 금지는 물론 닭·돼지사료와의 교차오염을 [illegible]

[illegible]